

대중문화예술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업무 협력 협약서(안)

한국콘텐츠진흥원(“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,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 교육 및 실태조사 업무위탁기관, 이하 “진흥원” 이라 한다)과 (사)한국 음악레이블산업협회(“종사경력 확인단체”, 이하 “확인단체” 라 한다)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업무, 실태조사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진흥원과 확인단체(이하 “양 기관” 이라 한다) 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내용)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세부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.

1. 종사경력확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
2. 종사경력 확인 요청 및 확인업무 수행
3.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업무
4. 대중문화예술산업 및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
5.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종사이력 관리
6. 양기관이 기타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합의한 사항

제3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확인단체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,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아닌 공익위원(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이 없는 위원을 말한다)이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 이 경우 공익위원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1인, 변호사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공익위원이 아닌 위원은 단체의 회원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또는 종사자로 하며 종사경력 4년 이상의 자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의결시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종사경력 증명서류 중 진흥원에 제출할 종사경력 확인서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.

제4조(종사경력 확인 요청) ① 진흥원은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신청인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에게 종사경력 확인업무를 수행할 확인단체를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한다.

② 진흥원은 종사경력 증명을 요하는 기간에 대해서 확인단체에게 30일 이내에 종사경력 확인을 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③ 진흥원은 확인단체에 확인 요청 시 신청인이 제출한 다음 각 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한다.

1. 국세청이 아닌 기관이 발급한 소득증명서류(국내기관이 발행한 소득증명서류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, 고용보험 취득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에서 어느 하나를 말하며, 외국의 기관이 발급한 소득증명서류도 제출할 수 있다)

2. 사업자등록증명(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한다)

3. 대중문화예술인과의 계약서류

4. 대중문화예술인이 작성한 구두계약 확인서(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에 관한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)

④ 진흥원은 종사경력 확인 접수시 제4조 제3항 서류와 관련하여, 필요시 신청인이 스스로의 경력을 보증 할 수 있는 종사경력 4년 이상인 자를 2인 이상 추천하도록 안내 한다.

제5조(종사경력 확인업무 수행) ① 확인단체는 진흥원으로부터 확인을 요청받은 종사경력 기간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종사경력 확인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한다. 회원이 아닌 자의 종사경력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도 이와 같다.

② 확인단체는 회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종사경력 확인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회원

과 차별 없이 종사경력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③ 확인단체는 단체의 회원 또는 임원이었다는 사실로 종사경력을 확인할 수 없다.

④ 확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모두를 종사경력 확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.

1.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4년 이상인 2인(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)이 각기 작성한 종사경력 보증서(보증 사유 및 근거를 적시하여야 한다)
2. 신청인이 진흥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로서 종사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3. 위원회의 회의록

⑤ 확인단체가 종사경력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종사경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제1항의 종사경력 확인서를 제출한다. 이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록만을 첨부한다.

⑥ 확인단체는 종사경력 확인서 제출 시 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종사경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**이의 사본을 따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.**

⑦ 확인단체는 진흥원을 통하여 신청인이 납입하는 확인 실비를 제외하고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확인에 관한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
제6조(확인 재요청) 진흥원은 추가적인 **종사경력 확인** 및 종사경력 확인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확인단체에게 30일의 기한 내에 종사경력 확인을 해줄 것을 재요청한다.

제7조(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업무) ① 확인단체의 요청이 있을시, 진흥원은 교육성과, 운영관리 능력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확인단체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 이 경우 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확인단체가 수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

③ 제2항에 따른 확인단체가 수행하는 교육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8조(효력의 발생) 이 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별도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. 다만, 확인단체가 지정 취소될 경우 이 업무협약의 효력은 없는 것으로 한다.

제9조(비밀 유지) 양 기관은 이 협약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상대 기관의 비공개 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는다.

제10조(분쟁해결) 본 협약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상호협력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며, 제3자의 개입을 허용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(기타사항) ① 종사경력 확인 절차 및 서식, 종사이력 관리 등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진흥원의 『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절차』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

② 본 협약서의 내용은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③ 본 협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이 별도 합의 하여 정한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,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년 9월 18일

한국콘텐츠진흥원

원 장 송 성 각



(사)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

회 장 김 병 찬

